



만두의 유럽 시장 공략, 원산지결정기준부터 알아보자!



- 2023년 만두 수출실적 역대 최고 기록
- 미국, 일본, EU로 주력 수출 중
- EU와 검역·위생 협상 타결로 열처리 가금육 포함 제품 수출길 열려
- 만두의 FTA활용,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보부터 시작해야

[글_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1) 개요



지금까지 EU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한국산 육류 및 육류 제품의 EU 수입을 금지해 왔다. 따라서 유럽에서 유통되는 한국 만두는 한국에서 수출된 해물만두, 야채만두 등에 국한되어 왔으며, 고기만두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만두를 EU 역내에 공급하는 형태 등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EU와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해외 현지 공장 없이도 열처리 가금육이 포함된 한국산 만두를 EU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¹⁾

EU는 복합식품 관련 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92)을 통해 복합식품²⁾에 대한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두 또한 복합식품으로 분류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라 한국산 동물유래 재료를 포함한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유래 재료가 ①EU가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되고 ②EU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를 충족하는 재료는 수산물과 젤라틴·콜라겐, 곤충뿐이었으나,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열처리 가금육을 포함한 K-만두의 수출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교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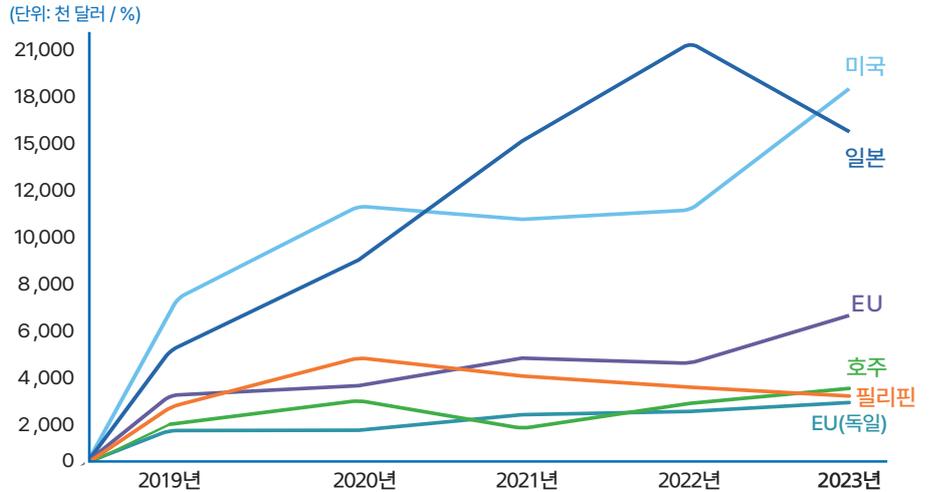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만두 수출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전체 약 66,410 천 달러 수준의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19년 대비 '23년 90% 이상 수출이 증가하였다. EU로의 수출 또한 '19년 대비 '23년 약 75% 이상 증가하였는데, 단일 국가로는 독일로의 수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엄격한 복합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주로 야채나 수산물 등이 포함된 만두만의 수출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관세부처합동,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길 열렸다, 보도자료, (2023.12.27)

2)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이란 가공된 동물유래 가공식품(Process Product of Animal Origin)과 식물성 원료를 함께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HS 코드 1517, 1518, 1601 00, 1602, 1603 00, 1604, 1605, 1702, 1704, 1806, 1901, 1902, 1904, 1905, 2001, 2004, 2005, 2008, 2101, 2103, 2104, 2105 00, 2106, 2202, 2208의 25개 품목이 해당된다.

● 제1902.20호 수출 현황



만두는 전세계 기준 2019년 ⊙ 2023년 기준 **90%** 수출이 증가
 특히, **EU**의 수출은 2019년 ⊙ 2023년 기준 **75%** 이상 증가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연도 제1902.20호의 총수출 대비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3) 품목분류 및 PSR



만두는 야채만두, 고기만두, 감자만두 등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지만 관세율표에서는 제1902.20호로 분류³⁾된다.

● 제1902.20호 품목분류

품목번호	품명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자료 출처: Ciel HS

'23년 만두 주요 수출국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한-미 FTA, RCEP, 한-아세안 FTA, 한-호주 FTA의 경우 주로 2, 4,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만두 제조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제11류), 채소류(제07류), 육류(제02류)의 HS code가 변경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제1902호 해설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옥수수·쌀·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식품이다." 및 "이 호의 파스타는 포함 비율에 상관없이 육·어류·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23년 수출 상위 5개국의 FTA 협정별 제1902.20호 원산지결정기준

주요국가	적용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한-미 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일본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호주	한-호주 FT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필리핀	한-아세안	가.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WO) 또는 나.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독일	한-EU FTA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자료 출처 : Ciel HS

다만, 한-EU FTA는 특정 원재료(제10류, 제11류)에 대해 완전생산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타 협정 대비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다. 특히 만두 제조를 위해 투입되는 밀가루의 경우, 체약당사국(EU산 또는 한국산)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원산지 육류 및 수산물(제2류, 제3류)은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만두의 주요 원재료 및 한-EU FTA PSR 충족 조건

주요원재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EU FTA PSR 해설
품명	HS CODE	
밀가루	1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등[제10류 및 제11류 해당하는 품목(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은 체약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하므로, EU 회원국산 또는 국내산 밀가루를 사용해야 함. • 비원산지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및 수산물 등(제2류 및 제3류)은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되어야 함.
당면	1902.19	
냉동돈육	0203.29	
양파	0703.10	
식용유(대두)	1507.90	

(4) 맺음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검역, 위생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입 규제 증가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수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엄격한 식품 수입 규정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협상 타결은 만두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한 기회 요인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만두뿐만 아니라 삼계탕, 냉동 치킨, 닭가슴살 소시지 등 열처리 가금육이 포함된 제품 전반의 시장 개척 활로가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올바른 원산지결정기준 숙지 및 FTA 활용을 통해 유럽 시장을 선도하길 기대해 본다.